

서울고등법원(춘천) 2022. 6. 10 선고 2022나31 판결 [사해행위취소]

재판경과

서울고등법원(춘천) 2022. 6. 10 선고 2022나31 판결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1. 12. 7 선고 2020가합31305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서울다솔

담당변호사 정영수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노재환

피고, 항소인1. B

2. C

3. D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재원

변론 종결2022. 5. 13.

판결 선고2022. 6. 10.

제1심판결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1. 12. 7. 선고 2020가합31305 판결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이 법원에서의 청구 감축에 따라 제1심 판결의 주문 제1항은 아래 가.항과 같이, 제1심 판결의 주문 제3항은 아래 나.항과 같이 변경되었다.

가. 피고 B, C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223,9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5.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피고 D은 원고에게 112,577,5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주문 제3의 가., 나.항 및 피고 B과 피고 D 사이의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2019. 11. 18.자 매매계약은 이를 취소한다(원고는 이 법원에서 피고 B, C에게 대여금 반환 및 연대보증금 청구액 중 변제금액을 반영하여 청구취지를 일부 감축하고,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원물반환을 구하다가 가액배상을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변경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제1심 판결 중 해당 부분을 고쳐 쓰거나 추가하고, 아래 제3항과 같이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하거나 강조하는 사항에 대한 추가 판단을 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다만 제1심 공동피고 E에 대한 부분은 제외한다),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3면 아래에서 제7행부터 제4면 아래에서 제7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2. 피고 B,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계약당사자 사이에 어떠한 계약 내용을 처분문서인 서면으로 작성한 경우에는 그 서면에 사용된 문구에 구애받는 것은 아니지만 어디까지나 당사자의 내심적 의사의 여하에 관계없이 그 서면의 기재 내용에 의하여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 의미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며, 이 경우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 그리고 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에 대한 증명책임은 처분문서의 문언과 배치되는 사실을 주장하는 측에 있다[대법원 2019. 10. 18. 선고 2019다237227, 2019다237234(병합) 판결 등 참조].

2) 갑 제3호증(차용금증서, 이하 '이 사건 차용금증서'라 한다)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B, C는 2019. 5. 10. '피고 B이 원고로부터 2억 4,000만 원을 이자 연 15%(지급 시기 매월 10일)로 정하여 차용하고, 위 원금에 대하여 1,000만 원은 2019. 5. 31.까지 변제하고, 나머지는 2019. 6.부터 매월 말일 150만 원씩 분할하여 변제하며, 피고 C는 피고 B의 위 차용금채무를 연대보증한다'는 취지의 차용금증서를 작성한 사실이 인정되고, 그중 1,610만 원이 변제되어 원금에 충당되었음을 원고가 자인하고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B, C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대여금 반환으로 223,900,000원(= 2억 4,000만 원 - 16,1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대여일인 2019. 5.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이율인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이하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대여금채권을 '이 사건 대여금채권'이라 한다).

나. 피고 B, C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 B, C의 주장 요지

원고는 피고 B와 같은 동네에 살던 이웃으로서 계를 운영하였는데, 피고 B은 원고가 운영하는 계에 가입하여 금전거래가 여러 차례 있었고, 피고 B이 계금을 납입하지 못하게 되면 원고가 대신 납입을 해 주는 일이 몇 차례 있었지만 그 채무가 2억 4,000만 원에 이르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피고 B은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았었는데, 원고의 권유로 피고 B, C의 재산이 경매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피고 B 명의로 되어있던 이 사건 토지 및 지상건물을 원고 앞으로 가압류하기로 하고, 2016. 1. 6. 피고 B이 원고로부터 2억 4,000만 원을 차용하였다는 취지의 차용금증서(갑 제5호증)를 작성하였다. 이후 위 F 지상 주택이 산불로 멸실되자 원고가 신축한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다시 가압류를 할 수 있도록 차용증을 작성해 달라고 요청하여 피고 B, C는 2019. 5. 10. 원고에게 이 사건 차용금증서를 새로 작성하여 주었다. 위와 같이 이 사건 차용금증서는 실제로는 차용사실이 없음에도 피고 B, C의 재산에 원고 앞으로 가압류를 하여 위 재산이 경매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작성된 것에 불과하므로 이에 기한 법률행위는 통정허위표시에 기한 것으로서 무효이고, 이 사건 대여금채권도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갑 제1호증의 2, 갑 제3, 5호증, 을가 제1, 3호증, 을라 제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 B은 2016. 1. 6. 원고로부터 2억 4,000만 원을 차용하였고, 위 차용금은 매월 400만 원씩 변제하기로 하는 취지의 차용금증서를 작성한 사실, 원고는 위 차용금증서 작성일로부터 약 2년이 경과한 2018. 4. 30. 이 사건 토지 중 원고 지분 및 그 지상의 멸실 전 건물(이하 '구 건물'이라 한다)에 원고 앞으로 가압류등기를 마친 사실, 2019. 초경 산불로 인하여 구 건물이 멸실되었고, 2019. 5. 10. 이 사건 차용금증서가 작성되었으며, 2019. 6. 10. 구 건물에 대한 멸실등기가 마쳐진 사실,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이 사건 건물이 신축되고 2019. 11. 7.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사실,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약 1년이 경과한 2020. 10. 27. 제기된 사실, 원고 명의의 I조합, 우체국, E 예금계좌 각 거래내역상 2억 4,000만 원의 입출금내역은 존재하지 아니하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원고 명의의 특정 예금계좌 거래내역상 처분문서 기재에 대응하는 입출금내역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계금장부가 제출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처분문서 기재와 같은 법률행위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점, 2016. 1. 6. 차용금증서를 작성한 이후 곧바로 원고 명의의 가압류등기를 마치지 않고 약 2년이 경과한 후에 가압류등기를 마쳤다는 사정은 위 차용금증서가 가압류를 위한 외형을 갖추기 위한 것이라는 피고 B, C의 주장보다는 실제로 이 사건 대여금채권이 존재한다는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사정으로 보이는 점, 피고 B, C의 주장대로라면 이 사건 차용금증서는 2016. 1. 6. 차용금증서와 동일한 취지로 작성하면 될 것임에도 종전과 달리 피고 C까지 연대보증인으로 추가된 점, 이 사건 차용금증서가 작성될 2019. 5. 10.은 구 건물의 멸실등기가 마쳐지기도 전이고 이 사건 건물이 신축되어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지기 전의 시점이므로 신축건물에 대한 가압류를 다시 마치기 위하여 이 사건 차용금증서를 작성하였다는 피고 B, C의 주장을 선뜻 납득하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차용금증서가 통정허위표시의 일환으로 작성된 것이라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 B, C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제7면 아래에서 제2행의 "원고는"부터 "하므로,"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피고 B, D이 이 사건 부동산을 근저당권의 제한이 없는 상태로 회복하여 이전하여 줄 수 있다는 특별한 사정도 존재하지 않으므로,』

○ 제8면 제10행의 "2억 4,000만 원 만으로도"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2억 4,000만 원에서 원고가 변제받았음을 자인한 1,610만 원을 공제한 223,900,000원만으로도』

○ 제8면 제12행의 "128,677,000원"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128,677,000원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112,577,500원』

3. 추가 판단

가. 피고 D의 주장 요지

피고 D은 이 사건 부동산을 신축함에 있어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고, 피고 D이 매매대금 지급에 갈음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건축비를 부담하고 체납된 세금을 대신 변제하는 조건으로 피고

B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것이며, 피고 D로서는 이 사건 대여금채권의 존재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 D은 이 사건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임을 알지 못하였다.

나. 판단

을다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 D이 이 사건 부동산의 건축비 대부분을 피고 B 대신 부담하였다거나, 그 밖에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에 상응하는 반대급부를 피고 B에게 제공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피고 D이 피고 B의 누나일 뿐만 아니라 피고 D 스스로도 피고 B의 체납된 세금을 변제해 주었다고 주장하였던 점에 비추어 피고 B의 경제적 상황을 어느 정도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 D이 이 사건 부동산을 주도적으로 신축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소유권보존등기는 피고 B 앞으로 마쳤던 점 등에 비추어보더라도, 이 사건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거나, 이 사건 매매계약의 사해행위성을 피고 D이 알지 못하였다는 피고 D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위 인용부분에 관하여 결론을 같이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다만 이 법원에서의 청구 감축에 따라 제1심 판결의 주문 제1항은 주문 제3의 가.항과 같이, 제1심 판결의 주문 제3항은 주문 제3의 나.항과 같이 각 변경되었다.

재판장판사견중철

판사이은상

판사김시원

별지